

# 2019년도 제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 자산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1. 회의 개요

- ① 명칭 : 2019년도 제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② 일시 : '19.1.29.(화)
- ③ 안건 : 총 3건(보고1, 의결2)
  - [보고1] 2018년 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
  - [의결1] 2019년도 여유자금운용계획(안)
  - [의결2] 2019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2. 논의 결과(요지)

#### □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접수

- ① 안건 주요내용 : 2018년 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
  - o (운용성과) 2018년 전체 운용수익률은 1.68%로 기준수익률 1.43% 대비 0.25%p 상회, 목표수익률 2.01% 대비 0.33%p 하회

(단위: %, %p)

구 분	운용수익률 (A)	기준수익률 (B)	목표수익률 (C)	초과성과	
				기준대비(A-B)	목표대비(A-C)
단기자금	2.26	1.70	1.83	0.56	0.43
현금성	1.77	1.63		0.14	-0.06
유동성	2.53	1.75		0.78	0.70
중장기자금	-0.18	-0.27	2.69	0.09	-2.87
기금전체	1.68	1.43	2.01	0.25	-0.33

## ② 검토의견 요지

- 중장기자산 운용 시 금융시장 분석을 통해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용 필요

### □ 의결안건 제1호 : 원안의결

- ① 안건 주요내용 : 2019년도 여유자금운용계획(안)

- (운용규모) 정진기금 '19년도 운용자산규모는 단기자금 2,461억원(95.3%), 중장기자금 121억원(4.7%)으로 총 2,582억원으로 추정

< '19년도 자금운용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운용평잔(억원)	목표비중	허용범위
<b>단기자금</b>	<b>2,461</b>	<b>95.3%</b>	<b>-15~+4.7%p</b>
현금성(3개월미만)	552	21.4%	±15%p
유동성(3~6개월)	373	14.4%	-14.4~+15%p
유동성(6~12개월)	1,536	59.5%	±15%p
<b>중장기자금</b>	<b>121</b>	<b>4.7%</b>	<b>-4.7~+15%p</b>
확정금리형	52	2.0%	-2.0~+15%p
채권형	55	2.1%	-2.1~+10%p
국내 주식형	10	0.4%	-0.4~+0.5%p
해외 주식형	5	0.2%	-0.2~+0.1%p
<b>기금전체</b>	<b>2,582</b>	<b>100%</b>	-

- (목표수익률) 정진기금 '19년도 목표수익률은 2.05%

구분	비중	목표수익률	비고
단기자금	95.3%	2.02%	
중장기자금	4.7%	2.57%	운용비중 가중평균하여 목표수익률 산정
기금전체	100%	2.05%	

## ② 검토의견 요지

- '19년 여유자금운용계획 적절함

## ③ 논의 결론

- 의결안건 제1호 '19년도 여유자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

## □ 의결안건 제2호 : 수정의결

### ① 안건 주요내용 : 2019년도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여유자금운용계획 의결사항 반영)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지침에 반영
  - 목표수익률 : 단기자금 2.02%, 중장기자금 2.57%, 전체 2.05%
  - 자산배분 : 단기 2,461억원(95.3%), 중장기 121억원(4.7%), 전체 2,582억원
- ('17회계년도 기금평가단 권고사항 반영)

#### (1) 운용상품 선택과 상품교체 및 재투자 정책\_(위임조문을 IPS에 반영)

(권고사항) '운용상품 선택과 상품교체 및 재투자 정책에 대한 기준'이 IPS 부속서류(금융기관선정 및 관리기준 제14조)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자산운용지침에서 해당 부속서류로 적절하게 위임되어 있지 않음

#### - (지침개정) 자산운용지침9.4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

현행	개정(안)
나. 금융기관에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적정 유동성,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에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적정 유동성,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을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 (2) 운영위험 규정 위반시 대처사항\_(위임조문을 IPS에 반영)

(권고사항) IPS상에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에서 운영위험의 경우 규정 위반 시의 대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 (지침개정) 자산운용지침8.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현재	개정(안)
다. 운영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략)</li><li>○ 운영위험 관리를 위해 규정 준수 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li></ul>	다. 운영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략)</li><li>○ 운영위험 관리를 위해 규정 준수 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규정 위반시 대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li></ul>

## (3) 공시주기 및 공시사항 추가

(권고사항) 주요정보의 공시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업데이트 주기를 좀 더 짧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 (지침개정) 자산운용지침11. 감사 및 공시

현재	개정(안)
<p>① 연간공시 : 자산운용지침, 연간 운용수익률, 연간 운용규모 등</p> <p>② 수시공시 : 그 밖에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① (좌동)</p> <p>② 분기공시 : 분기별 자산운용성과평가 결과</p> <p>③ 수시공시 : 위원회 회의결과 등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 (투자대상상품 체계 세분화) 투자상품 다양화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기간별 투자대상상품을 명확히 하여 규정 적용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p><b>7.3 가.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b></p> <p>① 확정금리형 상품 예치 ② MMF,MMDA,RP,CD 등에 대한 투자 ③ 연기금투자풀 예치 ④ 신용등급 AAA~AA-의 채권 매입 (CP, 전단채는 A1~A2+) ⑤ 원금보존추구형(ELB,DLB,ELD포함)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ELS, ELF 등 포함) 매입 ⑦ 신용등급 AA-미만의 채권(CP, 전단채는 A2+미만) 및 주식 매입 ⑧ 그 밖에 대체투자 및 파생상품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운용</p> <p>○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에 따른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p>	<p><b>7.3 가.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b></p> <p>① (좌동) ② MMF,<del>MMW,MMT</del>,MMDA,RP,CD 등에 대한 투자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p> <p>○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에 따른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p>

구분	투자기간	투자대상상품	구분	투자기간	투자대상상품
단기자금	현금성 자금 3개월 미만	<del>MMF, MMW MMDA 등 수시입출금 상품</del>	단기자금	현금성 자금 3개월 미만	수시입출금상품 : MMF,MMDA 등 <u>확정금리형상품 : RP, CD, 정기예금 등</u> <u>실적형상품 : 연기금투자풀, MMW, MMT, 국공채, 금융채 등</u>
	유동성 자금 3개월이상 ~ 1년미만	<del>수시입출금 상품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국공채 금융채 연기금투자풀 등 실적형상품</del>		3개월이상 ~ 1년미만	<u>확정금리형상품 : RP, CD, 정기예금 등</u> <u>실적형상품 : 연기금투자풀, MMW, MMT, 국공채, 금융채 등</u>
중장기자금	1년 이상	<del>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상품 연기금투자풀 등 실적형상품 주식, 채권, 대체투자, 파생상품</del>	중장기자금	1년 이상	<u>확정금리형상품 : RP, CD, 정기예금 등</u> <u>실적형상품 : 연기금투자풀, MMW, MMT, 주식 차관 대체투자 파생상품 등</u>

## ② 검토의견 요지

- 지침7.3의 투자대상 상품을 모두 표기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의견 반영

## ③ 논의 결론

- 의결안건 제2호 '19년도 자산운용지침개정(안)을 수정의결